

## 경운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인사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교”라 한다) 「교원인사규정」 제2조 제2항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자격과 임용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 및 구분)** 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(이하 “비정년교원”이라 한다)이란 임용자와 피임용자간의 계약 임용에 의하여 정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.

② 비정년교원의 근무기간, 처우,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. 다만,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‘비정년계열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직급은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구분하며,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과 산학협력을 전담하기 위한 교원으로 구분한다.

**제3조(자격)** 비정년교원의 임용은 「교육공무원법」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교원경력, 산업체경력 및 교원경력환산표에 의거하되, 본교 설립이념에 대한 이해와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신념과 인격 등을 참작한다.

**제4조(의무)** ① 비정년교원은 경운대학교에서 계약에 따른 강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대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사행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.

② 대학설립이념 구현에 적극 동참하며,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를 이행하고, 면학분위기 조성에 협력하며, 학사일정 및 학내 제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.

③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은 학칙 및 관련규정에 의거 책임학점을 담당하고 전임교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산학협력을 전담하기 위해 채용된 교원은 책임학점의 30% 감면을 적용하여 책임학점을 담당하고 산학협력 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.

⑤ 비정년교원은 교수회의를 비롯한 제반 공식기구나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**제5조(겸직금지)** 비정년교원은 타 기관에 종사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

**제6조(임용절차)** 비정년교원의 임용절차는 「경운대학교 교원인사규정」에 따르며,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이나 특별채용 방법에 의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**제7조(임용계약기간 및 재임용)** 비정년교원의 임용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, 업적평가의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외국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8조(신분보장)** ① 비정년교원은 임용기간 중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준하는 책임과 신분을 보유한다.

② 비정년교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「승선학원 정관」과 「교원인사규정」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용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

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 소속 전공, 학부(과) 또는 기관이 폐지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 
**제9조(보수 및 처우)** 비정년교원은 「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보수에 관한 규정」 등에 의거하여 보수를 책정한다.

**제10조(퇴직 및 임용계약 해지)** ① 임용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사실을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임용계약기간 종료일에 자동 퇴직된다.

② 해당 교과목 또는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과원 또는 폐직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관련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임용계약기간 중이라도 직무를 태만하거나 대학교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 할 때에는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11조(임용계약)**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.

1. 소속 및 직위
2. 임용계약기간
3. 보수(급여내역)
4. 복무내용 및 책임학점
5. 기타 필요한 계약사항

**제12조(업적평가)** 비정년교원은 계약기간 중 「경운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」에 의거 교육 및 연구 또는 산학 업적을 토대로 업적평가를 시행한다.

1.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: 교육 및 연구영역 평가 내용에 의함
2.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 : 산학 업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음

**제13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법령, 「승선학원 정관」 및 「경운대학교 교원인사규정」 등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